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4.>

입목의 유지기준(제27조 관련)

1. 수종 및 가슴높이 지름에 따른 산지 1만제곱미터당 적정 그루 수

수종	가슴높이 지름(센티미터)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이상
잣나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273
낙엽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298
리기다소나무	2,000	1,600	1,300	1,100	940	810	710	630	560	500	-	438
소나무(강원)	2,300	1,800	1,500	1,300	1,100	950	840	740	670	610	-	528
소나무(중부)	1,300	1,110	960	860	780	710	650	610	-	-	-	528
삼나무	2,200	1,860	1,630	1,430	1,260	1,130	1,010	890	-	-	-	533
편백	2,700	2,200	1,700	1,510	1,330	1,180	1,070	950	-	-	-	664
해송	1,700	1,400	1,200	1,060	950	850	750	660	620	-	-	435
참나무류	980	880	800	730	660	600	540	500	460	430	390	350

비고: 소나무(강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영양군·울진군·봉화군·영주시에 생육 중인 소나무를 말하고, 소나무(중부)는 그 밖의 지역에 생육 중인 소나무를 말한다.

2. 입목의 유지기준 적용 방식

가. 가슴높이 지름이 8센티미터 이상이고, 조림(造林) 후 10년을 초과한 산지는 해당 산림 내 입목의 그루 수가 제1호에 따른 적정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가슴높이 지름이 8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조림 후 10년 이내의 산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조림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초 조림한 그루 수의 80퍼센트 이상이 생존한 경우에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조림 후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초 조림한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생존한 경우에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 테다소나무·리기테다소나무는 리기다소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나무·종비나무·가문비나무·잎갈나무는 낙엽송의 기준을 적용하며, 테다소나무·리기테다소나무·전나무·종비나무·가문비나무·잎갈나무 외의 침엽수는 잣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산불·산사태·병해충 등으로 산지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지의 피해율은 산불·산사태의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병해충의 경우에는 나무그루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조사방법

대상지의 나무그루 수는 표준지 1개소 당 400제곱미터를 조사하여 산지 1만제곱미터당 적정 그루 수로 환산한다. 이 경우 표준지는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개소, 3만제곱미터 초과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개소, 10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4개소로 한다.